

춘천지방법원 2021. 4. 6 선고 2019가단464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송재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3. 16

판결 선고 2021. 4. 6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구 C 임야 4단 2무보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, 가.

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63. 2. 23. 접수 제1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나. 같은 등기소 1954. 1. 11. 접수 제995호로 마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'D'이 강원 홍천구 C 전 877평(약 2,894㎡, 이하 '이 사건 사정토지'라 한다)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.

나. 이 사건 토지(약 4,158㎡)에 관하여, 1954. 1. 11. 피고의 증조부인 D 명의로 매 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로되었고, 1963. 2. 23. 피고의 아버지인 E 명의로 1956. 9. 26.
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는데, 모가 1982.3. 12.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E 명의로 남아있다.

다. 강원 홍천구 C 임야 2,899㎡(이하 '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*라 한다)에 관하여, ① 구 토지대상의 소유자란에는 그 첫째 난에 F이 단기 4248(1915년).

7. 6. 사정받은 것으로, 둘째 난에 G가 1965. 1. 12. 소유권을 보존한 것으로, 셋째 난에 H이 1970. 12. 24.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, ② 1965. 1. 12.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되었고, 1970. 12. 24. H 명의로 1970. 11. 2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으며, 2009. 3. 10. 원고 명의로 2009. 1. 8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다.

그리고 1976. 1. 18.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.

라. 원고는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를 경작하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부터 8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요지

원고는 부모에 이어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고,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도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의 면적과 일치하는 반면,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실제와 크게 다르므로,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 단

1)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, 비록 이 사건 사정토지, 이 사건 토지 그리고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의 각 면적이 상이하지만, 모두 지번이 같아 동일한 토지로 보이고,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,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이 사건 사정명의 토지의 면적과

거의 같고, 실제 면적과 일치함에반해,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실제 면적보다 1,259㎡ (= 4,158㎡ - 2,899㎡)나 더 크게등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.

2) 구 토지대장(갑 5)은 1975. 12. 31.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 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없는 반면에(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다202878판결 등 참조),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6다55692, 55708판결 등 참조).

3)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의 증조부인 D 에게 사정이 있는 후에 재결에 의해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거나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등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,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.

4) 따라서 근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김도현